

의안번호	제45호
의결 연월일	2025년 6월 11일 (제329회)

심 의 의 결 사 항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병훈 의원 등 3인
제출연월일	2025. 5. 29.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박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
----------	----

발의연월일 : 2025. 5. 29.

발 의 자 : 박병훈·정기수·최명수의원(3명)

1. 제안이유

금산군이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
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행사’, ‘홍보물’ 등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나. 홍보물에 공개하는 행사 예산 범위를 총 3천만원 이상 행사로 규정(안 제3조)
- 다. 행사 예산 공개 내용은 재원별 예산 현황, 예산지원 부서명으로 규정
(안 제4조)
- 라.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재원별 예산
현황, 예산지원 부서명을 표기를 규정(안 제5조)
- 마. 행사 예산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
록 하고, 제2조에서 정의한 각 홍보물의 공개 방법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나. 입법예고 : 2025. 5. 31. ~ 6. 4. (5일간)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
3. 사업부서명

제5조(공개 의무) 군수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행사 예산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